

의정부고산 S-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 07. 11)

1. 건설위치

단지명	주 소	건설호수	최초입주
의정부고산 S-6BL	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101, (산곡동, 고산6단지 더 라피니엘)	293	'22.10

- LH콜센터(1600-1004, 1670-0003)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7.1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일일자에 예비입주자 모집하는 의정부시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모집공고('24.07.11.)와 각각 신청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모든 행복주택 간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함).

- 의정부고산 S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7.1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2)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3)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형 주택(55A2형)은 위 대상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다음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주거약자”란?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주거약자가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됨

* 금회 모집하는 주거약자용 주택(55A2형)이 청약 미달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진 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55A2형에 입주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추후 개별안내)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공급대상(계층) 및 순위(입주자격완화 순위 및 일반공급 순위)에 적격하지 않을 경우, 단지별·공급형별 모집하지 않는 공급대상(계층)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대상 선정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오니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 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고산 S-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293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587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이며,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장시간 대기과 혼잡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하여 **현장접수 불가**하오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접수일에 현장접수 합니다. **(반드시 「6신청서류」를 확인하시어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타 증빙서류 등 지참, 미지참시 접수 불가)**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완화] 금회 공고는 **입주자격 요건(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자세한 **입주자 선정순서는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완화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	입주자격완화 내용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대상		가구원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인		110% 이하
		3인 이상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요건 			
	공급대상		일반조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대상		완화조건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2인		140% 이하
		3인 이상		13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요건 			
	공급대상		완화조건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자녀의 연령		9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9세 이하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대상		완화조건	
	전체		1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2. 임대대상 및 조건

2-1. 임대대상

공급 형별	공급대상 (계층)	주택타입	건설호수	모집호수 (예비자)	세대 당 계약면적(m)				합계	최대 거주 기간	구조 및 난방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55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55A1	28	25	55.99	22.1811	8.2126	38.6039	124.9876	6~10 년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지역 난방
		55A2	4		55.97	22.1732	8.2097	38.5902	124.9431		
		55A3	11		55.90	22.1455	8.1995	38.5419	124.7869		
		55A4	74		55.86	22.1296	8.1935	38.5143	124.6974		
		55A5	27		55.97	22.1732	8.2097	38.5902	124.9431		
55B		55B1	10	15	55.96	22.1692	8.2082	38.5833	124.9207		
		55B2	5		55.92	22.1534	8.2024	38.5557	124.8315		
		55B3	19		55.99	22.1811	8.2126	38.6039	124.9876		
		55B4	30		55.95	22.1653	8.2068	38.5764	124.8985		
		55B5	13		55.99	22.1811	8.2126	38.6039	124.9876		
55C	55C1	14	10	55.52	21.9949	8.1437	38.2799	123.9385			
	55C2	34		55.59	22.0227	8.1540	38.3282	124.0949			
55A2 (주거약자용)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55A2(주거 약자용)	24	20	55.97	22.1732	8.2097	38.5902	124.9431		

2-2.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대상 (계층)	기본 임대조건(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55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2,814,000	4,640,700	88,173,300	448,600	(+)	46,000,000	138,814,000	180,260
						(-)	76,000,000	16,814,000	670,260
55B		92,004,000	4,600,200	87,403,800	444,680	(+)	45,000,000	137,004,000	182,180
						(-)	76,000,000	16,004,000	666,340
55C		92,365,000	4,618,250	87,746,750	446,430	(+)	45,000,000	137,365,000	183,930
						(-)	76,000,000	16,365,000	668,090
55A2 (주거약자용)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92,814,000	4,640,700	88,173,300	448,600	(+)	46,000,000	138,814,000	180,260
						(-)	76,000,000	16,814,000	670,260

- 의정부고산 S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7.11.이며,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의정부고산 S6블록 행복주택(293세대)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587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전세대는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팬트리-드레스룸/작은방-알파룸은 분리공간으로 공급되고 바닥재는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됩니다.
- 주택타입이 아닌 공급형별로 공급 및 청약 접수합니다(55A1/A2/A3/A4/A5타입은 구별없이 55A형으로 공급, 55B1/B2/B3/B4/B5타입은 구별없이 55B형으로 공급, 55C1/C2타입은 구별없이 55C형으로 공급함).
- 55A2 주거약자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청약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본 단지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내 카세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공가 추가발생 등으로 예비입주자 모집호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의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입주 가능한 공가가 있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개별안내)하므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 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추후 공가 발생으로 계약 체결후 **미입주 해약 신청시 위약금이 발생**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
외국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직계존비속	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중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㉔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㉕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①-㉓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①-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㉕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완화조건] 13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구분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인	5,957,283원 이하	110%	7,040,426원 이하	130%	8,123,568원 이하	150%
	3인	7,198,649원 이하	100%	8,638,379원 이하	120%	10,797,974원 이하	150%
	4인	8,248,467원 이하	100%	9,898,160원 이하	120%	12,372,701원 이하	150%
	5인	8,775,071원 이하	100%	10,530,085원 이하	120%	13,162,607원 이하	150%
	6인	9,563,282원 이하	100%	11,475,938원 이하	120%	14,344,923원 이하	150%
맞벌이 신혼부부	2인	7,040,426원 이하	130%	7,581,997원 이하	140%	8,123,568원 이하	150%
	3인	8,638,379원 이하	120%	9,358,244원 이하	130%	10,797,974원 이하	150%
	4인	9,898,160원 이하	120%	10,723,007원 이하	130%	12,372,701원 이하	150%
	5인	10,530,085원 이하	120%	11,407,592원 이하	130%	13,162,607원 이하	150%
	6인	11,475,938원 이하	120%	12,432,267원 이하	130%	14,344,923원 이하	15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2순위 945,853원, 3순위 1,182,317원), 맞벌이 **945,853원** (2순위 1,024,674원, 3순위 1,182,31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예비)배우자가 각각 신청시 1세대 1주택 신청원칙에 따라 중복신청이므로 모두 무효 및 부적격 처리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맞벌이로 신청할 경우 소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인천광역시, 1순위 이외의 경기도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1.)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주거약자”란?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인천광역시, 1순위 이외의 경기도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주거약자용 배점

※ 배점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 아래 「부양가족의 범위」 확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의정부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동일 순위 및 배점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신청접수 (온라인/현장)	인터넷청약자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 2024.07.22(월) 10:00 ~ 07.24(수) 16: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2024.07.30(화) 16: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2024.07.31(수) ~ 08.05(월)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 제출처 :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0층 LH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 8.5(월)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현장 서류제출 등 불가) - 봉투 겉면에 아래사항 반드시 표기 "이름/신청단지/접수번호/주택형"	2024.10.25(금) 16: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ARS (1661-7700)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시 예비자 순번 부여 후, 공가 발생시 추후 개별 통보 (공가 있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 체결을 안내 받을 수 있음 개별 통보)
※ 현장 청약신청 2024.07.24(수) 10:00 ~ 16: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현장접수 장소 :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8층				

- 청약 신청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현장 청약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공고문 [6.신청서류]를 확인하시어 구비서류를 지참 후 접수일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지참시 접수불가)
 -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타 자격 증명서류 등 [6.신청서류] 확인
 - * (신청일자 및 장소) '24.07.24(수) 10시~16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8층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PC/모바일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4.7.30(화)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24.7.31(수)~8.5(월)]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6.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 누락없이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 (서류제출방법) 등기우편 ('24.8.5(월) 우체국 소인(발송)분까지 유효, 일반우편·택배·현장제출 등 불가)
 - * (서류제출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0층 LH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앞 (우편번호 11674)
 - * 봉투 겉면에 "이름/신청단지/접수번호/주택형" 반드시 표기
 - *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 또는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도달여부 조회)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 중에서 **현장 청약신청자는 신청 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
 - 서류제출대상자 및 최종당첨자 발표 확인방법
 -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선택
 - * 최종당첨자 발표 확인방법 : LH 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는 청약접수 결과, 순위, 배점 및 추첨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일정배수 내외 선정되며, **입주자격검증 후 적격자가 모집호수 초과시 순위·배점이 낮거나 추첨결과 등에 따라 최종 낙첨(탈락)**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또는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주자격 검색처리 기간 등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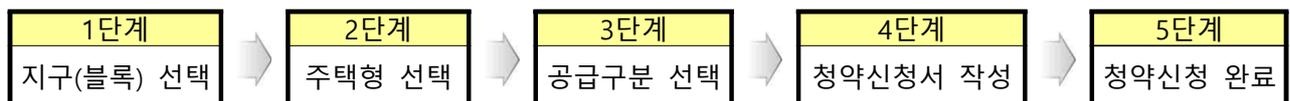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에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및 모바일) 청약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신청(PC 및 모바일) 공통 유의사항]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또는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에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 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이 종료 후에는 변경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청약신청에 필요한 신청순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인터넷 PC 신청방법]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4.07.22(월) 10:00부터 7.24(수)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 모바일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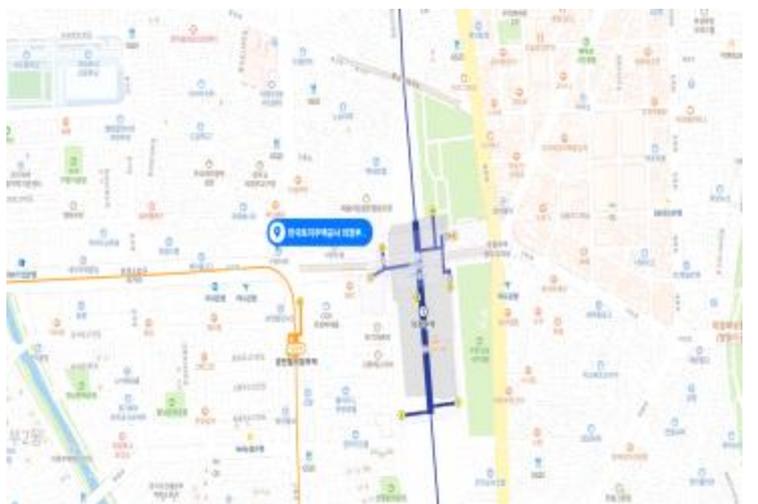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4.07.22(월) 10:00부터 7.24(수)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 취소 가능)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청약신청 방법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함)

-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희망자는 **모집일정과 구비서류를 필히 확인하신 후 접수장소에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6. 신청서류」 및 아래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정된 분은 현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하므로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현장에서 어떤 단지 및 주택형을 신청하면 좋을지 등 **상담불가**하므로 신청하실 단지와 주택형을 정해서 오셔야 하며, 신청자격 요건 등도 반드시 숙지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신청장소

LH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접수일	2024.07.24.(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방문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8층 (의정부동 431-24)
교통편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3번 출구 도보 3분 / (경전철) 경전철의정부역 2번 출구 도보 2분 (버스) 의정부역, 서부광장, 의정부서부역 또는 의정부2동 주민센터 정류장 하차 후 도보 2분

<p>약도</p>		<p>※ 해당 건물은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p> <p>※ 자가용 이용 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구비 서류</p>	<p>□ 아래 서류와 공고문 [6.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미지참시 접수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 신청 시(예비배우자 포함)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및 아래 ①인감증명방식 또는 ②자필서명방식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감증명방식 : 위임장(별첨6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② 자필서명방식 :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별첨6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07.30.(화) 16:00 이후]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선택
- *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하므로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 * 서류제출기간 : **2024.07.31.(수) ~ 08.05.(월)**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일자가 '24.08.05.(월)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함)
-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기우편 외 방법은 모두 접수 불가)
- * 제출서류 : 공고문 「6. 신청서류」 및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될 서류제출안내문 확인하여 제출
- * 서류제출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0층 LH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앞 (우편번호 11674)
(봉투 겉면에 **"이름/신청단지/접수번호/주택형" 반드시 기재** (예. 홍길동/고산S6블록/60021/55A형))
- * 서류는 누락없이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 입주자 당첨 선정 과정에서 제외(부적격 처리)**합니다.
- *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 또는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도달여부 조회)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07.1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시점 : (PC·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 제출
(현장 신청자) 청약 신청 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공통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필수 제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입주자격완화 약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첨1-1 별첨1-2
[필수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작성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동의란(2군데) 모두 성명을 정자로 기입(사인 및 도장 X)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첨2 별첨4
[필수 제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불필요 ※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별첨3
[필수 제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발급방법) 당해지역 거주기간,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아래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행정복지 센터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해당자만 제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발급방법)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여부 상관없이 필히 제출,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해당자만 제출]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해당자만 제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주택 신청자 중 중증장애인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복지 센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관할지사
기타서류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상자(계층)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맞벌이로 신청 시, 근로소득자인 경우 신청자-배우자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및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별지5-1, 5-2 공사서식)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도 발급 가능)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맞벌이로 신청 시, 근로소득자인 경우 신청자-배우자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별도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 해지 처리됨 	공사서식 행정복지센터
전체계층 중 해당자만 제출	<p>[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의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사본(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 제출서류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12.7.10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0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7.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2024.10.25(금) 16: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예비입주자 계약 안내 [개별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입주 가능한 공가가 있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공급형별로 대기중인 예비자 및 공가 수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여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

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이후에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예비자지위)이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센터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8.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

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증축업 또는 부화업

총 자산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9.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입주자격</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body> </table>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예비입주자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 border="1" data-bbox="284 409 1455 595">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기준에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입주자 선정(당첨자 발표)일 전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이후 부적격 해지(위약금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세대구성원 포함)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LH청약플러스의 고객센터-예비입주자순위"서비스를 통해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주거복지지사에 통보하시기 														

	<p>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p>*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p>
입주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는 입주지정기간 내 가능하며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p>
지구 및 단지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주 전 관리사무소를 통해 사다리차 이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하1~2층 1056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5대이며, 총 1,061대 중 33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임(장애인 주차대수 동별로 상이함) -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투시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함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함 - 본 사업지구는 의정부 시청에서 7km,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4km지점으로 의정부시 동측에 입지하며, 서측으로는 기 조성된 금오, 송산, 민락 택지개발지구 및 민락2 공공주택지구가 입지함 -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국도 43호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구)서울외곽순환도로) 및 동부간선도로 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사업지구 동측으로 강변북로와 연결되는 세종포천고속 도로가 개통되어 서울로의 접근이 향상되었음 - 지구 남서측에 의정부 경전철 차량기지가 입지하고 있음 - 지구 서남측 국도 43호선 건너편에 미군부대 및 의정부교도소가 위치함 - 지구 인근에 군사시설(헬기장 포함)이 입지하고 있으며, 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북측에 묘역(신숙주 선생 등)이 있음 - 세종포천고속도로 이용시 사업지구 내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는 없으며, 민락2지구내 민락IC를 이용하거나, 지구 남측 43호선을 경유하여 동의정부IC를 이용하여야함 - 인접 공원, 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이 같은 동 내 혼합 배치되어 있음 - 단지 외곽에 위치한 일부 동은 도로에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동 주 현관 경사램프와 인접한 일부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분리수거대,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등이 각 동 인근에 설치되어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됨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대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됨
- 전기실발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가,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운동시설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고, 동별 지하 PIT층에 집수정용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과 진동이 일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및 주방공용 배기용 루프팬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에 한함) 및 1층 승강장, 단지 내 출입구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 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단지 내 시설은 지역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피공간에는 철제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전(세탁, 손빨래, 물 뿌리기)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건식개념으로 바닥배수가 설치되지 않음
- 대피공간에는 수전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 설비제품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내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세대는 해당부위에 대한 상부장 면적이 일부 축소됨
- 공용욕실, 부부욕실은 모두 습식욕실로 시공됨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 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공기흡입·배출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마감에 설치되고 세대 중 1개 발코니에 환기용 유니트 및 환기덕트가 설치됨. 이로 인해 천정 커튼박스가 일부 축소되거나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발코니와 인접하여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각 층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정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및 1층과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함
- 엘리베이터 홀 복도창은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상시 개방되고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임
- 주방가구, 화장대 드레스룸장, 붙박이장 등 가구설치 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됨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부 라인은 승강기에 인접하여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주택형은 발코니(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설치공간은 제품에 따라 반입 및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함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뽀뽀로 시공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시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거실 아트월 및 주방벽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정에 설치되는 욕실 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에는 댐퍼만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을 적용함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됨
- 일부 발코니에는 환기용유니트 및 덕트, 선홍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 동(608, 609, 610동)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설계부하용량은 55m²형 4,650VA임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됨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의 창호 측면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에 설치됨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동은 차량 진출입 시 경보음 발생과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됨 - 승강로 및 관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됨 - 세대 내 통신단자함은 신발장 뒷면에 설치되며, 세대분전반은 신발장 측면 건식벽에 매입설치 됨 - 최상층세대의 발코니 및 각세대 실외기실 조명기구와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됨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입주자가 설치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은 실내구조(폭, 높이, 깊이 등) 및 형태에 따라 배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단지명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의정부고산 S6	한국토지주택공사 (120-82-09373)	주식회사 KR산업 (129-81-27691)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목양 (408-81-42391)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55A2형) 입주자만 신청 가능]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 ~ 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 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등 단지별 상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기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통 유의사항

금회 모집 단지는 기입주 단지이므로 **장애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불가**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능 항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개별안내 받은 **계약체결 기간 내**
- 신청방법 : **등기우편**으로 편의시설 설치 신청서(별첨7) 및 아래 신청자격 증빙서류 제출
* (등기우편 발송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0층 LH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앞 (우편번호 11674)
- 신청자격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수첩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및 모집공고 상담 1670-0003
당첨자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7.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